

서울특별시 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286
------	-----

2007. 9. 10  
재정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7년 8월 17일
- 나. 제출자 : 서울특별시
- 다. 회부일자 : 2007년 8월 21일
- 라. 상정일자 : 서울특별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(2007년 9월 10일) 상정, 의결(원안 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 : 정 순 구 산업국장)

- 가. 제안 이유  
국내협력계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, 국내·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관련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존 국제협력기금을 대외협력기금으로 확대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국제협력기금을 대외협력기금으로 개칭하고, 대외협력기금 내에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을 별도로 분리 설치함.(안 제4조)
- 계정별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조성 및 지출 등 운용·관리를 독자적으로 수행함.(안 제8조)
- 국제협력계정 기금의 용도를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확대하여 기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도모함.(안 제6조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안 석 수)

가. 개요

- 서울특별시 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
  -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국제협력기금을 대외협력기금으로 개칭하고, 대외협력기금 내에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을 별도로 분리 설치 및 운용하려는 것임.
  - 또한, 현행 조례의 기금용도가 개발조사 사업과 사업계획의 수립 및 재해·재난 구호경비로 제한적으로 규정된 것을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경비의 지원으로 용도를 확대하려는 것임.

나. 세부검토

-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지방정부로 범위를 정한 사항에 대해서(안 제2조)
  - “국내 타지방자치단체”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에서 규정한 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안의 자치구를 제외한 시·군·구로 규정하고 있음.
  -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안의 자치구를 제외시킨 이유는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의 경우, 「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.
  - “외국 지방정부”는 서울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지방정부로 규정하였으나, 선언적 규정으로 특별한 의미는 없음.
- 국내 및 국제협력계정을 별도로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(안 제4조)
  - 기존 국제협력기금을 대외협력기금으로 개칭하고, 대외협력기금 내에 국내협력계

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하는 것임.

- 국내협력계정은 국내 타지방자치단체(광역 및 기초 포함, 서울시 자치구는 제외)와의 교류협력 및 이들에 대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재해·재난 구호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차원임.
- 국제협력계정 기금의 용도를 변경한 것에 있어서(안 제6조)
  - 기존 조례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는 개발조사 사업과 사업계획의 수립 및 재해·재난 구호경비로 지정되어 있어 원활한 기금 운용상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.
  - 따라서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경비의 지원으로 용도를 확대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는 것은 기금설치의 취지에 부합된다 하겠음.
  - 또한, 국가간 협력 이외에 국제도시 간 협력과 교류가 보다 강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별도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함.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(안 제8조)
  - 대외협력기금내에 별도 설치되는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 계정을 각각 분리·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각각의 위원회를 구성 하려는 것임.
  - 기금의 조성 및 지출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것은 기금운용의 엄격하고도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함.
- 기금관리에 있어서(안 제7조 및 안 제9조)
  -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관을 국내협력계정은 경영기획실장으로, 국제협력계정은 산업국장으로 한 것과, 분임기금운용관(국내: 기획담당관, 국제: 국제협력과장)을 간사로 두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계정별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치로 보임.
  - 또한, 계정별로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, 정책기획관 등과 그리고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에서 호선토록 한 것으로 기금운용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별 다른 문제점은 없음.
- 기타 안 제10조(계정별 위원회의 운영), 안 제11조(수당)는 일반적인 조례와 동일한 사항으로 별 문제점은 없으며, 부칙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유효기간을 둔 것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」 제4조에 의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한 것에 따른 것임.

다. 종합검토

- 재정적인 면을 고려할 때, 기금의 재원이 시 출연금에 의존 하고, 기금의 적립액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내계정으로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기금 규모 증액 필요성이 제기 되겠음.
- 한편, 조례에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중앙정부에서 서울시의 특별지원 요청이 많아 질 우려가 있으므로,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여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자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음.
- 이외에, 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은 기존에도 서울시가 지원해 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기존의 국제협력기금에서 기금의 용도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명기하여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,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기금의 용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설정함으로써 낱말 또는 오용될 낭비적 요소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데?
- 답변 : 당초 기금의 용도가 너무 협소한 관계로 운용면에서 제약이 있어 금번에

이를 개정하려는 것임.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, 연말에 기금운용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다고 봄.

- 재해·구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마련된다면, 정부차원의 특별지원요청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은 없는가?

－ 답변 : 국가의 책임 회피 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. 재해·구호 등은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며,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적인 차원이므로 상호 협력하여 이루어질 것임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7명, 전원찬성)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.....